

제주 복지

지역복지
원스톱상담서비스
지원사업

길라 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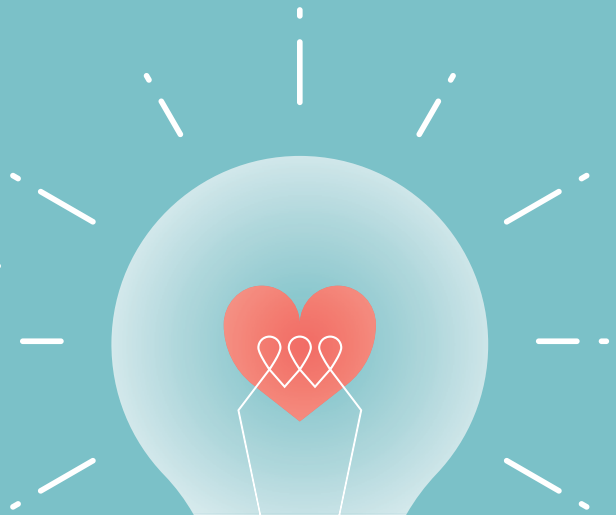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www.jejubokji.net

제주 복지

지역복지
원스톱상담서비스
지원사업

길라잡이



01

5 복지정보 이용 방법

복지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6 제주복지'넷'

8 제주복지'통'

10 제주복지'콜'

02

13 복지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꼭 읽어보아야 할 기초 자료

03

19 복지서비스 안내

- 20 저소득
- 48 노인
- 67 장애인
- 88 보건·의료
- 104 고용·주거
- 113 아동·청소년·가족

04/05

- 130 주요기관 연락처
- 131 도내 행정기관 연락처

01

복지정보 이용 방법

복지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 제주복지'넷'
- 제주복지'통'
- 제주복지'콜'

01

복지정보 이용 방법 복지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제주복지'넷' (www.jejubokji.net) 이용 안내



- 제주복지'넷'은 복지서비스 통합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인터넷 웹사이트입니다.
- 복지서비스 검색 : 키워드 검색, 생애주기별, 분야별 검색
- 복지시설·기관·단체 검색 : 분야별, 시설명 검색, 웹지도 검색
- 온라인 상담 : 복지 일반, 법률, 노무, 영양, 정신건강, 주거복지 상담
- 실시간 채팅상담서비스
- 복지정보제공 : 이럴 땐 이런 서비스, 제주복지TV, 제주사회복지신문, 채용정보, 복지현장소식 및 일정 등
- 제주복지'넷' 첫 화면 검색창에 내가 찾는 복지서비스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복지 서비스, 시설·단체 현황 및 복지현장 소식 등 다양한 복지정보가 검색결과로 나타납니다.



원하시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해보세요!

Q

예) 노인요양원, 제주사회복지

제주복지넷
통합복지하나로
복지정보
복지상담
Facebook
Instagram
로그인
회원가입

현재소통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검색 결과

전체 검색
노인
검색하기

전체

복지서비스

시설 및 단체

게시판

"노인"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결과 내 재검색
검색어기

복지서비스(50)

노인 복지관, 경로당 이용

아르산 등내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복지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병문요양, 긴급돌봄 등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제공인력 자격요건 등이 유사한 장기요양서비스(병문요양, 방문간호, 방문특덕, 주야간보호),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도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상담 및 신청 지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주복지'통'이용안내



IOS



안드로이드

- 제주복지'통'은 사회복지시설·단체정보 검색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2022년 12월 기준 도내 1,287개소의 사회복지시설·단체 정보 지역별·분야별 검색 가능
-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56개소의 긴급·상담전화, 자원봉사관리센터(345개소) 정보 탑재 및 홈페이지, 통화연결 기능
- 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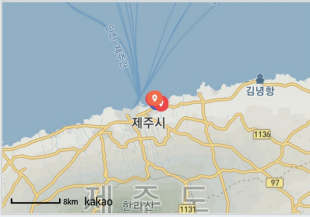
- 1 지역별 시설안내**
읍·면·동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우리 동네의 사회복지시설·단체 리스트가 검색 결과로 나타납니다.
- 2 분야별 시설안내**
아동, 청소년, 여성, 한부모, 노인, 장애인복지 등 분야를 선택하면 관련 사회복지시설·단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검색된 리스트 중 사회복지시설·단체명을 선택하면** 전화번호, 홈페이지, 시설 전경, 제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SSN 제주복지통

📍 **지역별 시설안내**

우리동네 사회복지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

화북1동 ▼

검색

아동복지(3)	+
청소년복지(1)	+
지역사회복지(2)	+

←
≡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SSN 제주복지통

검색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지역사회복지
 긴급전화	 치매센터	 법률상담터
 영유아복지		

←
≡

 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SSN 제주복지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전화


홈페이지


길찾기


건물전경





로드뷰




전화번호


064-702-3784

통화하기


홈페이지

jejubokji.net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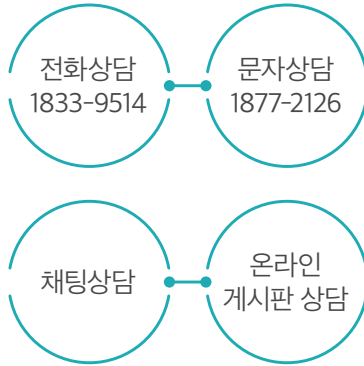

주소

(6330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제공서비스(프로그램)

복지정보 상담전화

제주복지'콜' 이용안내



- 제주복지'콜' (1833-9514)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채팅,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문전화상담 (법률·노무·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 사례 1

저는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 손목, 발목, 정강이 등에 계속된 통증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 진통제를 먹거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라테스를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등록하려고 알아보니 재활목적의 필라테스는 1:1 수강을 받아야 해서 비용이 많이 비싸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주복지콜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찾아보더니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1:1 코칭수업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일단 방문해보니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비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운동을 알려줄 전문트레이너도 있었구요. 센터장님은 센터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묻더군요. 제주복지콜 상담원이 아니었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 2

저는 현재 유방암 2기 투병 중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고 항암치료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문의하려고 제주복지콜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은 도외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 이용하는 선박이나 비행기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며 안내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주민센터에 신청 후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2회 지원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2

**복지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꼭 읽어보아야 할 기초 자료**

02

복지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꼭 읽어보아야 할 기초 자료

※ 이 책자에 수록된 복지서비스 정보의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등의 내용 중 별도 기준연도 표기가 없는 것은 2022년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22년 '중위소득 46%이하'에서 2023년 '중위소득 47%이하'로 조정 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각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자격 기준은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되는 기준으로 단순히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52%	1,080,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3,758,550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72%	1,496,08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중위소득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85%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중위소득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7,925	1,03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023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3,368	1,30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4인 기준 2,560,540원 2023년 4인 기준 2,700,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022년 2인 기준 1,695,244원 4인 기준 2,662,962원 2023년 2인 기준 1,797,201원 4인 기준 2,808,501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03

복지서비스 안내

- 저소득
- 노인
- 장애인
- 보건·의료
- 고용·주거
- 아동·청소년·가족

03

복지서비스 안내

저소득

0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 거 급 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교 육 급 여 교육급여 콜센터 02-6222-6060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급여 지원

구비서류

- 필 수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단, 생계, 주거,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진료기록부 2개월 이상 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등

사업개요

1.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 급여	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소득 인정액

• 기본재산 공제액(제주도는 중소도시에 해당)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3.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할 경우 보장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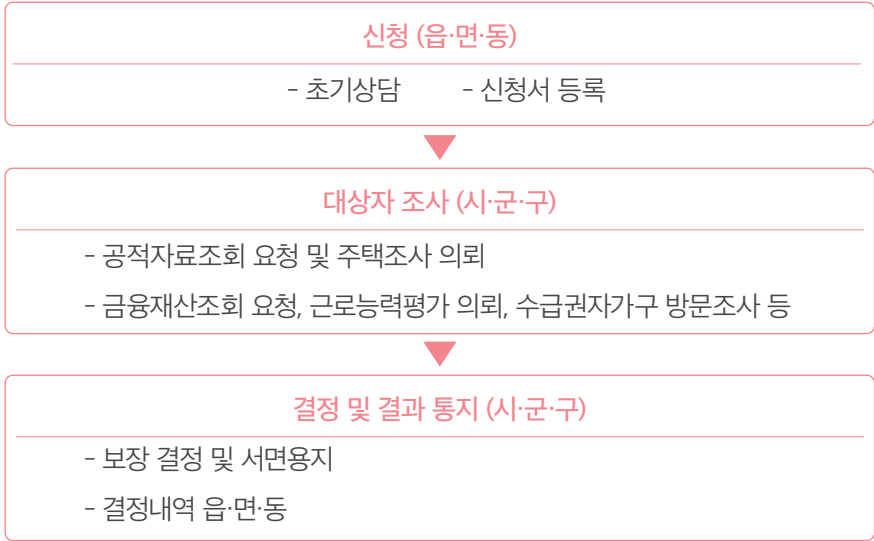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부모가구와 한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재산상황이 부모가구에 반영됨. (생계급여 신청 시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한 가구로 산정됨)

5.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원 (예: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6,330원 지급)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가구 : 1종 - 근로능력가구 : 2종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4급지(그 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163,000원	183,000원	218,000원	254,000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지원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 출산시 140만 원) 지급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업무 흐름도



02 저소득층 정부 양곡할인

 주소지 읍·면·동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2. 지원내용

•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할 경우 기준가격의 60 ~ 92% 할인 지원

		구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 곡 (21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900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 ~ 15일

• 배송기간 : 신청일 익월 1일 ~ 1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03 긴급복지지원제도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비서류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음.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 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필 수 : 주거관련서류,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체 통장거래내역
- 해당자 : (위기사유에 따른 아래 해당서류 구비 제출)
 - 의료지원 :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임대확인서 등
 - 휴 폐 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교정시설출소자 : 출소증명서
 - 노숙자 : 긴급지원의뢰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업개요

1.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2021. 5. 20. 시행)

-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 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75%)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 재산합계 : 재산(금융재산 포함)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제주도는 중소도시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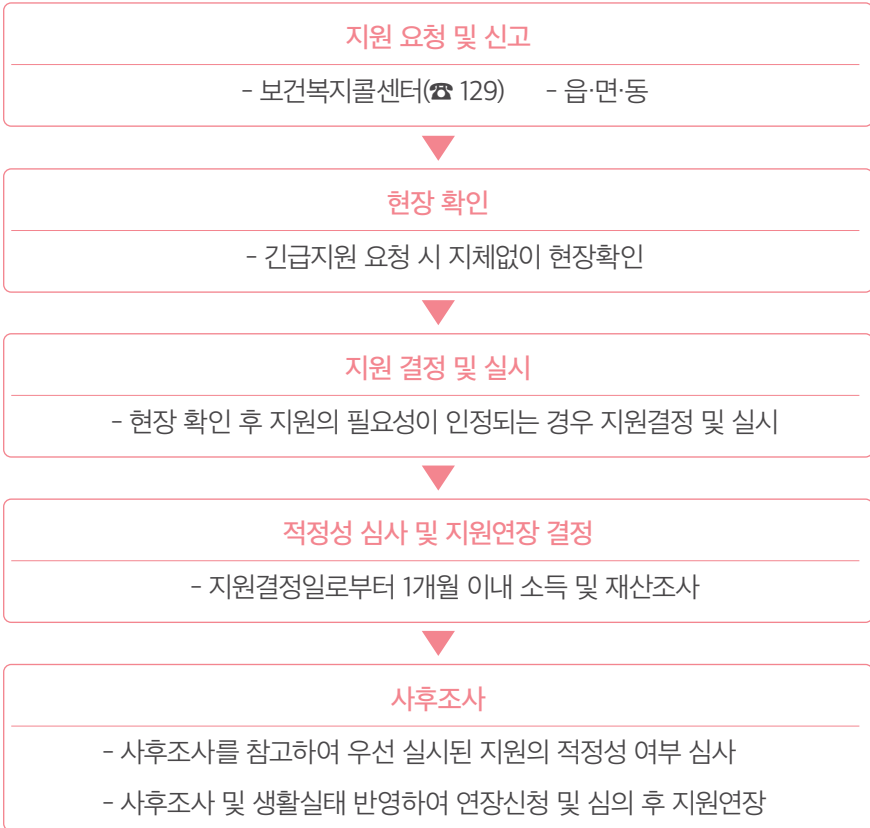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횟수
주 지 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 가 지 원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 요금 단전시 연체된 전기로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업무 흐름도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0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비서류

- 필 수 : 신청서, 진단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희귀난치·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확인, 18세 미만인 자는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사업개요

1.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재산기준(제주도는 중소도시에 해당)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은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득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이 주거용재산 인정기준액(대도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서는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3.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단위 : 원)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차상위 대상자	1인(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2인(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3인(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4인(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4.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업무 흐름도

신청 (읍·면·동)

-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조사 (시·군·구)

- 긴급지원 요청 시 지체없이 현장확인소득인정액,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 조사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신청인의 가구특성 등 실태조사



결정·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장 확인 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시·군·구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정 및 '안내문 발급(건강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 공단은 결정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원결정 및 실시

0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구비서류

- 본인신청 : 발급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 발급신청서, 대리인의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 ※ 만 14세 미만 발급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아동기본증명서(상세), 아동가족 관계증명서 지참 필수

사업개요

1.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1만원

2. 지원금액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단,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자 등 자동재충전 제외)

3. 발급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접속

5. 유의사항

-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 발급 카드는 지원금 소진 후에도 차년도 재충전시 사용 가능

업무 흐름도



06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

지원대상

- 비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 장애인 : 만 19세 ~ 64세의 장애인 (소득제한 폐지)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후 본인 신청 가능

사업개요

1.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95,000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main.do>)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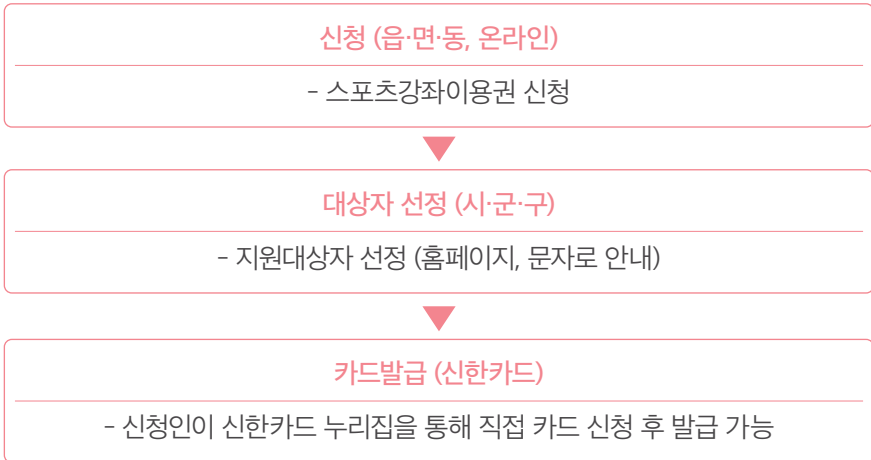
2. 발급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비장애인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접속 ▶ 개인이용권신청
 - 장애인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접속 ▶ 개인이용권 신청

3. 지원금액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해야 시설로 수강료가 입금됨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 시 지원불가)
- 3개월 연속 미사용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업무 흐름도



07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

※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

구비서류

탑승권(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금액, 성명 명시 필수))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

사업개요

1.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연간 1인당 최대 12회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도외 항공료 또는 선박비 (KTX, 열차, 버스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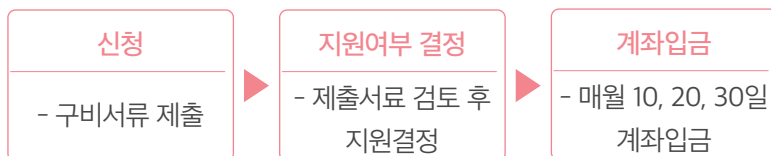
※ 비행기의 경우 이코노미 좌석에 한함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매월 10, 20, 30일에 계좌입금

업무 흐름도



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교육비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양육비 등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세대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8% 이하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사업개요

1. 구분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

※ 2022년 10. 1.부터 복지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기준 증가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52%)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60%)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제주도는 중소도시에 해당)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3. 부양의무자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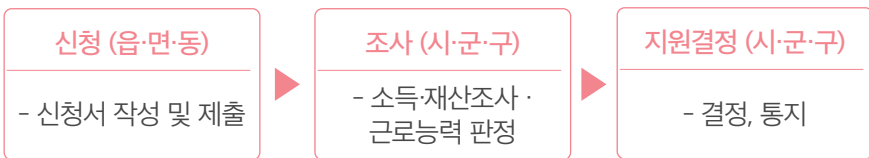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4.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부 또는 모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중인 부 또는 모	실비*
	자립촉진수당	학업, 취업활동가구	월 10만원

업무 흐름도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0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 제주도 평생교육과 ☎064-710-3628
 읍·면·동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초·중·고등학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초등학생),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초등학생)

※ 유사한 목적으로 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중·고등학생)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등

사업개요

1.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2. 지원방식

• 카드 발급을 통한 지원(등록 가맹점에서 결제)

3. 지원분야

• 온라인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 학습도서 구입 등

- 온라인 강의 : 메가스터디, 이투스, 엠베스트, 엘리하이, 비상교육이러닝(수박씨),
 아이스크림 에듀, EBS 스스로 배움터, 유웨이, 투모라이즈

- 그 외 도내 서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 가능

※ 기타 카드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꿈바당 학습비지원 홈페이지(<http://jeju.nhdream.co.kr/#>)로 접속 후
 확인가능

※ 유의사항 : 이전연도에 꿈바당 카드를 발급받은 지원 대상자는 자동 충전되지 않으니 기한내에 반드시
 재신청 필요

업무 흐름도



1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구비서류

- 필 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 해당자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수), 장애인증명서

사업개요

1.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① ~ 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 가능
-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4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장구 구입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 간병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별도의 의학적 기준 참조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③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조제분유: 연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

업무 흐름도



11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영아 (0 ~ 24개월) 가정

구비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저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 지원대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기저귀	월 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0 ~ 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조제분유	월 90,000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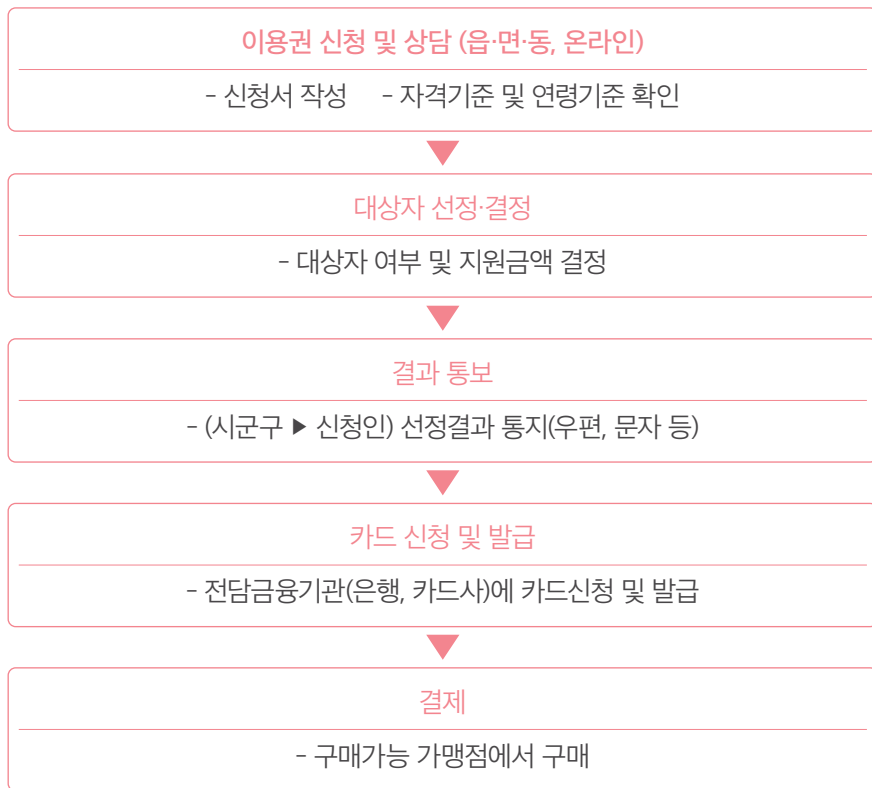
4.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및 국민행복카드 종류·신청처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으로 접속 후 확인 가능

업무 흐름도



노인

이 기초연금사업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구비서류

- 필 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2. 지원내용

- 2022년 기준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부부 1인가구	부부 2인가구
일반	307,500원	492,000원 (각 246,000원)

- 최저 지급액 : 30,7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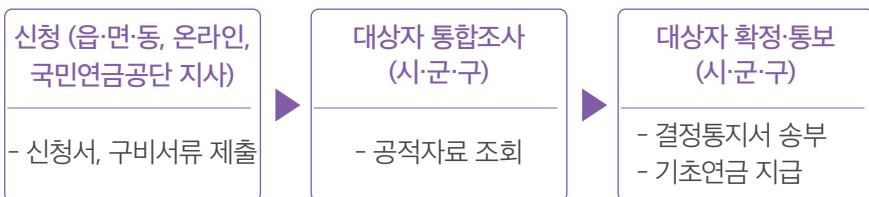
3. 신청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예. 1958년 9월생(주민등록기준일)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4. 참고사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사전 신청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이 유효한 경우 신청 가능
 - 한국의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기준 충족 시 지급되며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됨

업무 흐름도



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어르신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등
- 해당자 : 사실혼 관계확인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어르신 (독거노인 외에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도구(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 조사)를 통해 선정

2.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호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서비스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 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 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 및 문화활동 - 평생교육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 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 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 및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특화서비스

우울, 고립, 자살생각 등이 높은 어르신 대상 서비스제공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별 수행기관 현황 (2022.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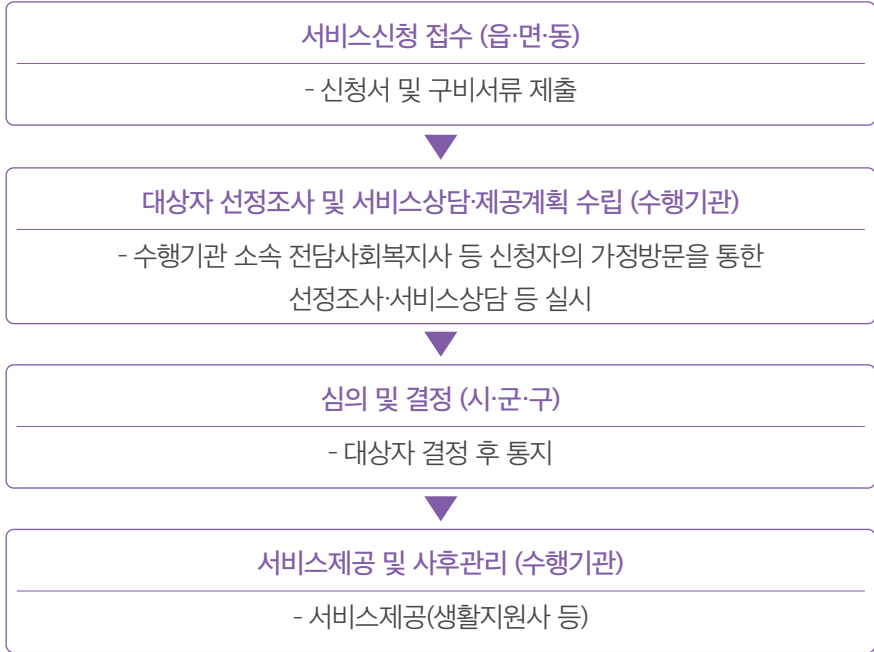
<제주시 6개소>

권역별	대상지역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1권역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제주원광 재가노인복지센터	양지혜	제주시 애월읍 하 귀미수동길 19	743-7781 (743-7780)
2권역	구좌읍, 조천읍, 추자면, 우도면	은빛마을 노인복지센터	한애정	제주시 조천읍 함 덕20길 42	784-3999 (784-3997)
3권역 (광역)	일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제주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김종래	제주시 동문로 80, 2층(일도2동)	759-9261 (725-9264)
4권역	이도1·2동, 건입동, 오라동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김효철	제주시 도남로7 길 40, 3층	757-0002 (757-0074)
5권역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성안노인복지센터	이경자	제주시 중앙로 470,4층(아라동)	702-1250 (702-1251)
6권역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노인복지센터	신현권	제주시 장군내길 68-1(외도동)	746-8336 (746-8337)


<서귀포시 4개소>

권역별	대상지역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1권역	대정읍, 안덕면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사회서비스원 서귀포종합재가센터	양시연	서귀포시 중산간 동로 7905	760-2406 (760-2389)
2권역	성산읍, 표선면	성산원광소규모 요양시설	이미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중앙로 76-2	782-4689 (782-3844)
3권역	남원읍, 효돈동, 동홍동, 영천동, 송산동	서귀포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이은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2,3층(동홍동)	738-7080 (733-7081)
4권역	정방동, 중앙동, 대륜동, 서홍동, 대천동	서귀원광 노인복지센터	양순옥	서귀포시 서홍 로69번길 129- 12(서홍동)	763-2456 (763-1740)

업무 흐름도



0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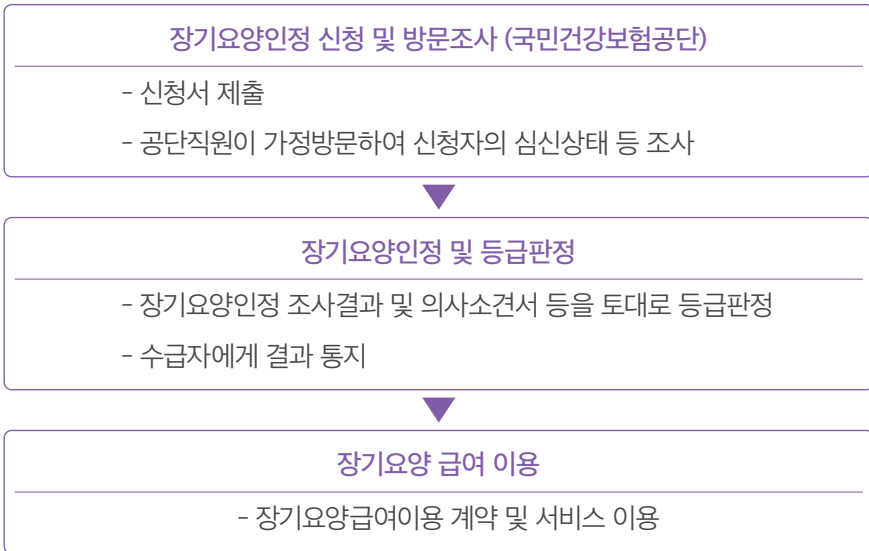
구분	급여내용	
재가 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
시설 급여	노인요양 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때 지급 (월 15만원)	

2. 지원내용

- 총급여의 본인부담비율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		
	일반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재가급여	15%	6%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업무 흐름도



04 치매조기검진사업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사업개요

1. 지원내용

- 치매선별검사 무료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일부 지원 : 치매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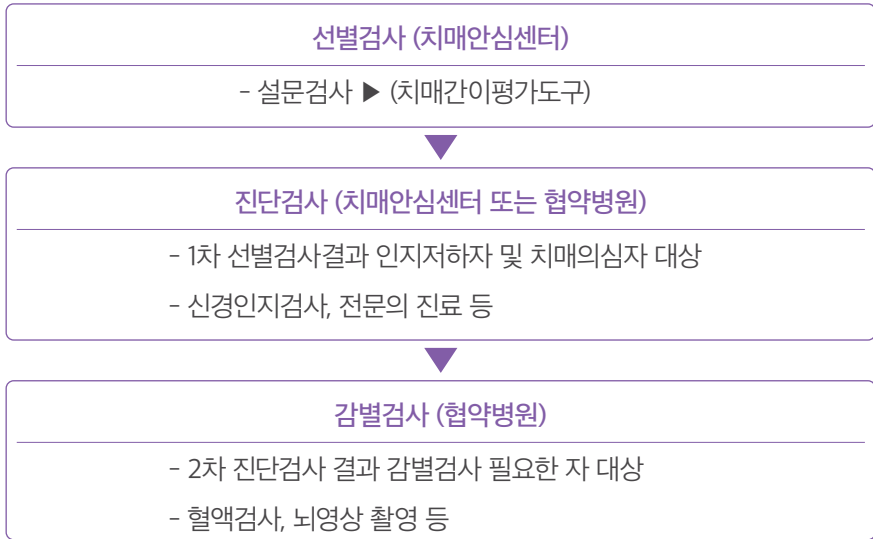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120%)	2,333,774원	3,912,102원	5,033,641원	6,145,296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구분	시설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제주시치매안심센터	제주시 도남동 연삼로 264	064-728-8500
	제주시동부치매안심센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4길 6	064-728-7551
	제주시서부치매안심센터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064-728-8661
서귀포시	서귀포시치매안심센터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064-760-6555
	서귀포시동부치매안심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064-760-6125
	서귀포시서부치매안심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5번길 12	064-760-6249

업무 흐름도



05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구비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약 처방전(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 처방내역 기재 필수)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및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구분	내용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 ~ 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치료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 치료약 복용여부 확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2.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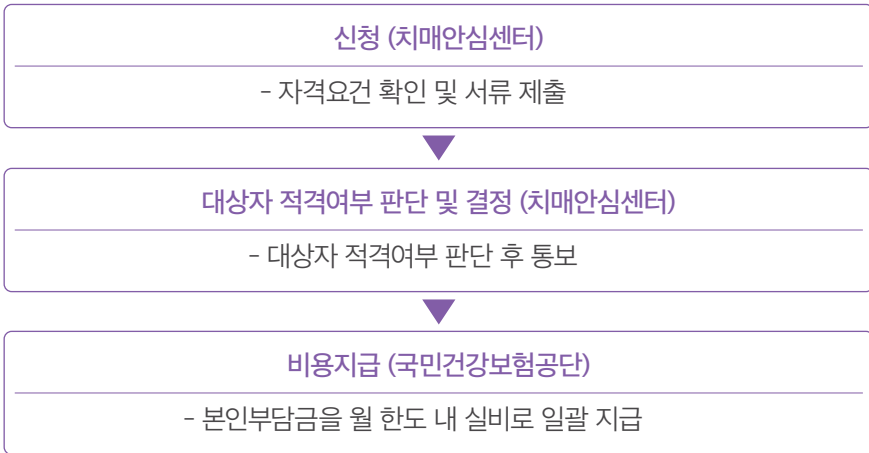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구분	시설명	주소	연락처
제주시	제주시치매안심센터	제주시 도남동 연삼로 264	064-728-8500
	제주시동부치매안심센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4길 6	064-728-7551
	제주시서부치매안심센터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064-728-8661
서귀포시	서귀포시치매안심센터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064-760-6555
	서귀포시동부치매안심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064-760-6125
	서귀포시서부치매안심센터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5번길 12	064-760-6249

업무 흐름도



06 제주도 어르신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보청기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틀니 :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구비서류

신청서, 의사처방전(보청기 또는 틀니), 신분증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보청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청각장애인	7년 이내 중복 신청자
틀니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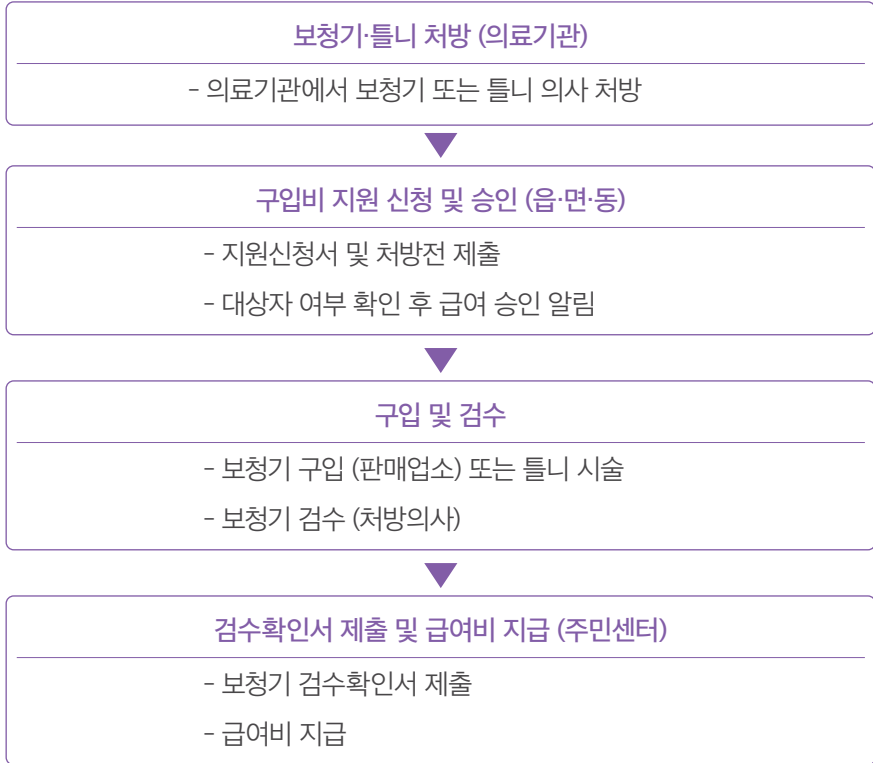
2. 지원내용

구분	금액
보청기	최대 34만원 한도
틀니	건강보험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약당 2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업무 흐름도



07 제주교통복지카드

☎ 발급문의 : 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 버스이용 문의 : 제주도 대중교통과 ☎064-710-4335
 🚖 택시이용 문의 : 제주도 교통정책과 ☎064-710-2454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구비서류

신분증, 대상자 확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 도장 (서명가능)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발급 대상자	버스 요금면제 적용
어르신	만 70세 이상	본인 무료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 보호자(1인)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무료
국가 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본인 + 보호자(1인) 무료
	국가유공자 1급	본인 + 보호자(1인) 무료
	국가유공자 2 ~ 7급	본인 무료
	5·18민주유공자 1급	본인 + 보호자(1인) 무료
	5·18민주유공자2 ~ 14급	본인 무료
	참전유공자	본인 무료
	기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 무료

* 급행버스(빨간색버스) 및 공항리무진(600번, 800번)은 버스요금 면제 제외

* 대상자 중 '본인 + 보호자(1인) 무료'인 경우 보호자만 탑승시 버스요금 면제 제외

•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금액 지원내용 (2023년부터 개편)

- 1회 사용금액이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액(연간 168,000원 한도 지원)

-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이월하여 연말까지 사용 가능

(예. 택시요금 5,000원 결제 시 이용잔액(7,000원 - 5,000원)이 2022년까지는 소멸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연말까지 사용 가능)

2.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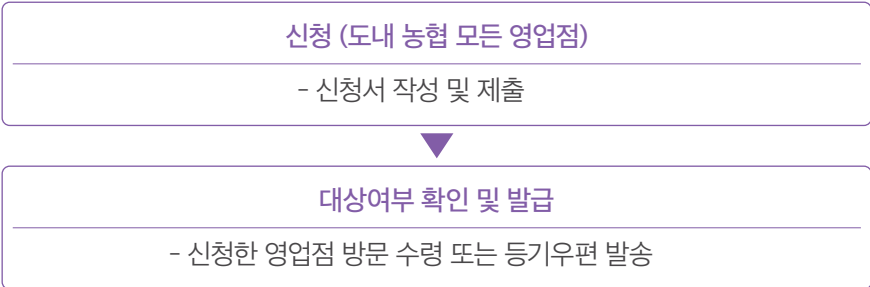
- 신청시기 : (어르신) 만70세 도래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자 등록시
- 신청장소 : 도내 농협 모든 영업점
- 카드수령 :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발송(신청 후 5 ~ 10일 소요)
- 사용가능일 : 2023. 1. 2.(월)부터

※ 기존 제주교통복지카드(제주은행 발급)는 '23. 2. 28.까지만 사용 가능(택시는 '22. 12. 31.까지)

3. 유의사항

-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나 신용카드는 연회비 있음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1인 1매 사용 원칙으로 중복 발급 불가
- 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하며, 부정사용 시에는 일정기간 카드사용 정지됨

업무 흐름도



08 장수수당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

구비서류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개요

1.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25,000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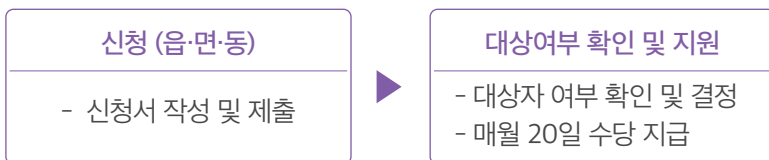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이 신청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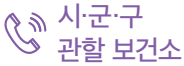
3.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중단
-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조치

업무 흐름도



09 노인백내장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사본), 국가유공자증(사본)

사업개요

1.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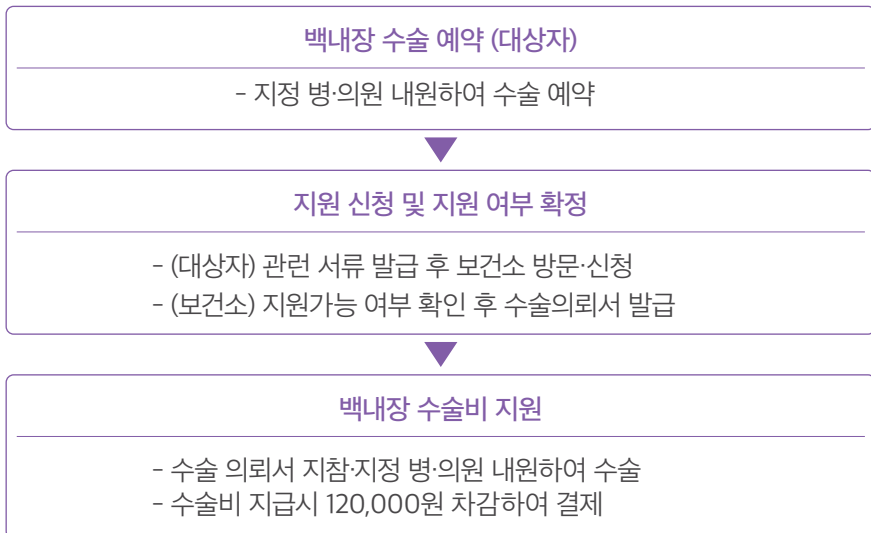
- 만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2. 지원범위

- 인당 연 1회(1안),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업무 흐름도



장애인

이 장애인 등록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지원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구비서류

- 필 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 해당자 : 검사결과지, 증빙사진(등록하고자 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름)

사업개요

1.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진단비용 지원
(신규등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판정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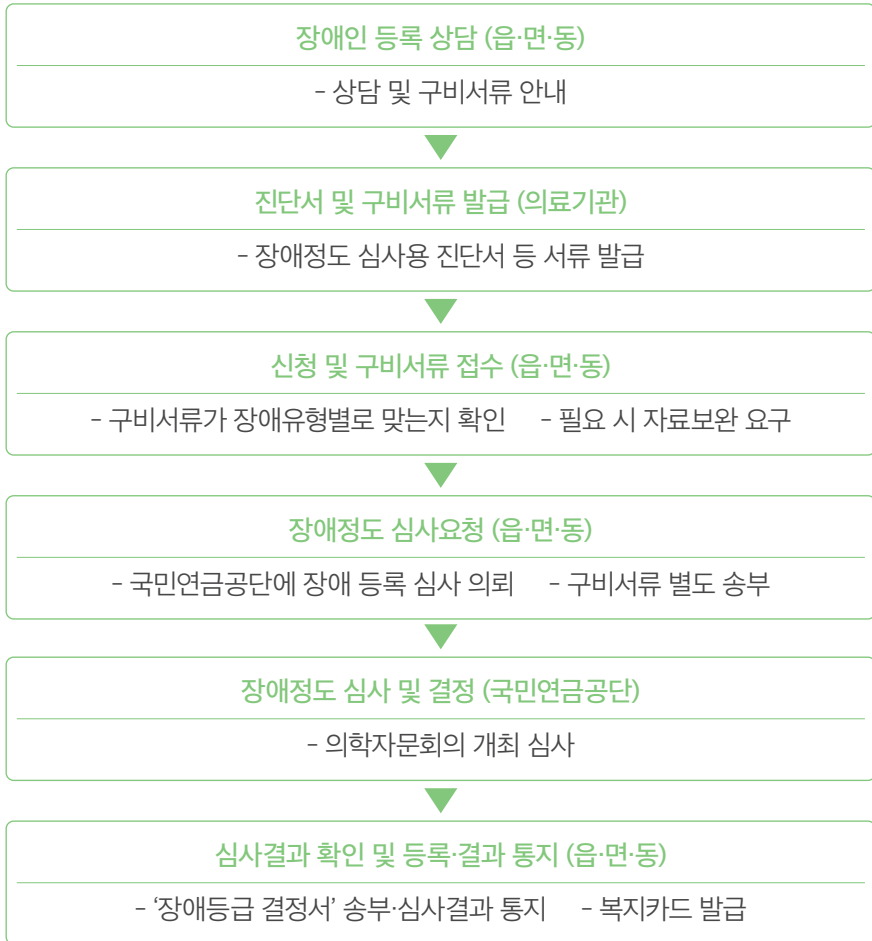
2. 처리기간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30일 소요

3. 참고사항

※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업무 흐름도



02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지급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구비서류

- 필 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서류 등

※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확인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pop_paper_list.jsp)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할 것을 권유

사업개요

1.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요 건
연령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지급내용

• 장애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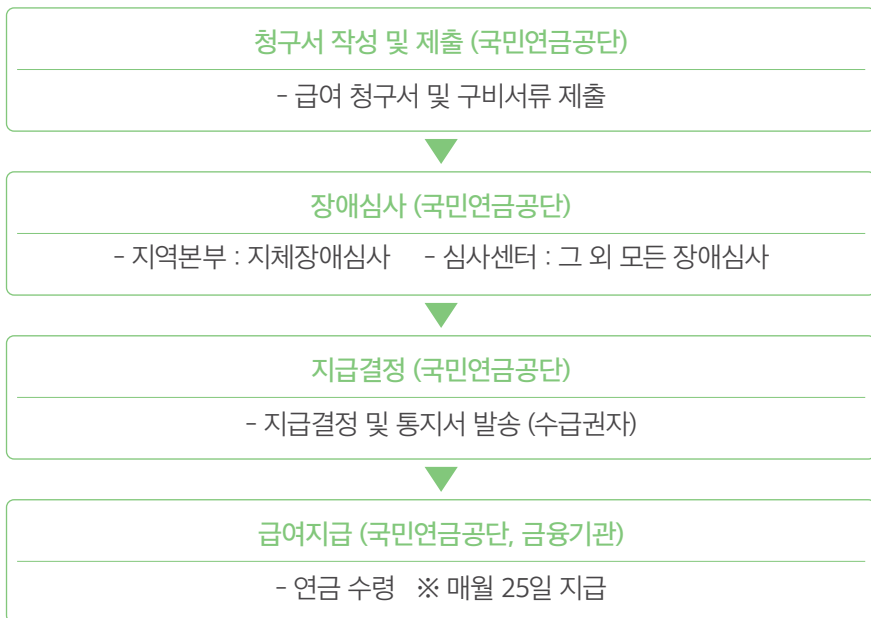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함

3. 청구방법

청구인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청구 (예외 : 법정대리인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등)
청구기한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적용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

업무 흐름도



03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도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220,000원	1,952,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2.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87,500 · 기초급여 307,500 · 부가급여 80,000	387,500 · 부가급여 387,50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7,500 · 기초급여 307,500 · 부가급여 70,000	70,000 · 부가급여 70,000
차상위 초과	최고 327,500 · 기초급여 307,500 · 부가급여 20,000	40,000 · 부가급여 40,000

업무 흐름도



*차상위계층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65세 이상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04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경증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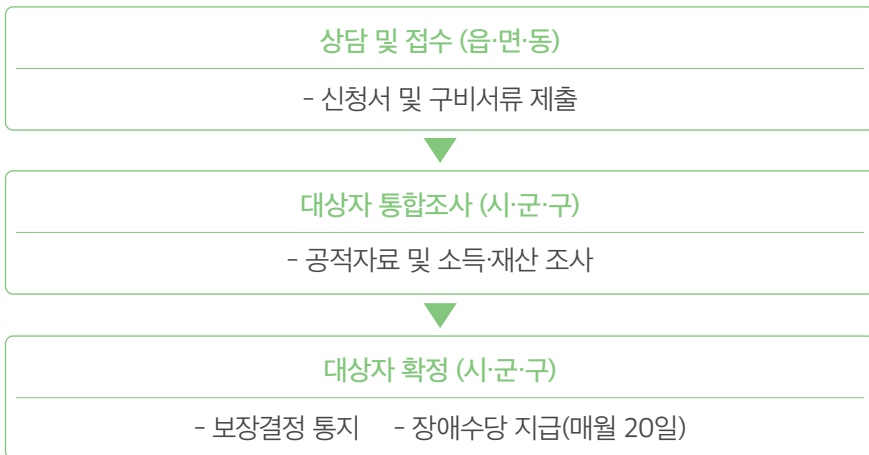
2. 지원내용

구분	장애수당	지급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매월 20일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2만원	

3. 참고사항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함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재심사 면제

업무 흐름도



05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 ~ 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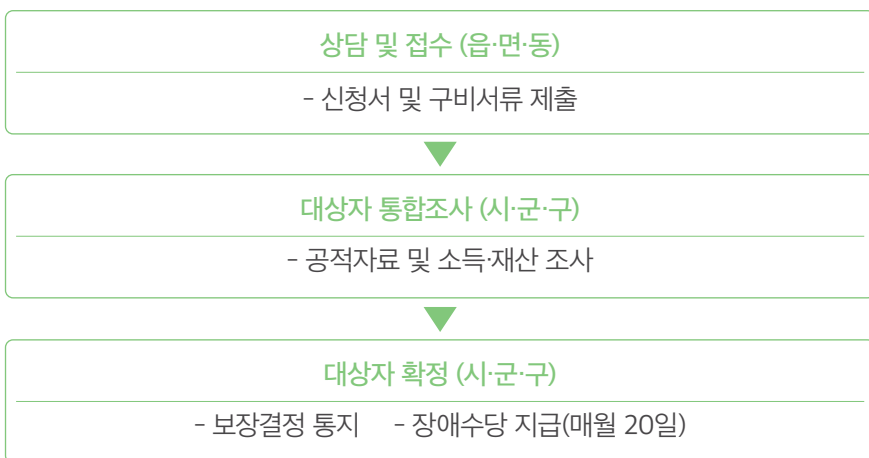
2. 지원내용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 2,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지급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원	월 11만원	매월 20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9만원	월 3만원	

3. 참고사항

- 만 18 ~ 20세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 불가하여 선택 신청해야 함
-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재심사 필수 (단,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재심사 면제)

업무 흐름도



06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내 지원 가능
 -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도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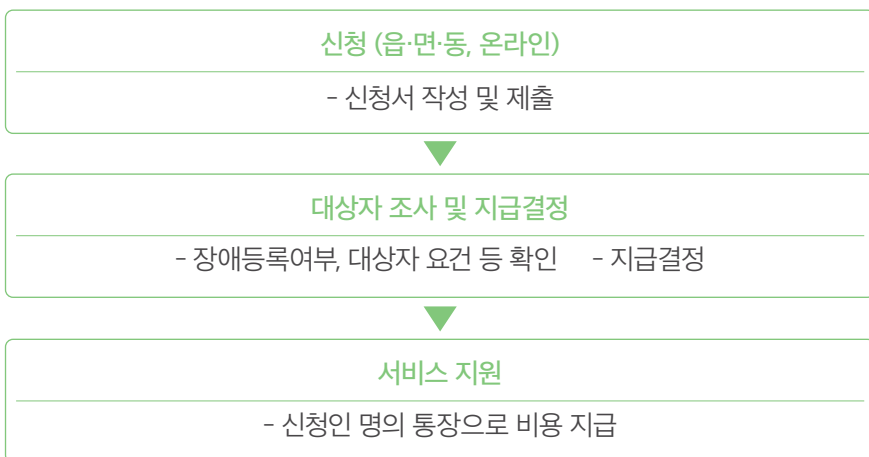
2. 지원내용

-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현금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지참 필수)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의 '생애주기 / 꾸러미 서비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업무 흐름도



07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시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 7. 1. 이전 1급 장애인)

구비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 7. 1.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기존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2. 지원기준

- 외래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3. 지원불가 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 예약진료비
- 전액본인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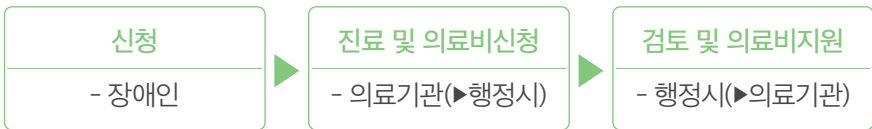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 단, 의료기관은 제주도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 청구기한 : 진료를 행하거나 퇴원한 해당연도

업무 흐름도



08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시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투석 받고있는 자,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2. 지원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 1회에 한함)

3.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별지6호 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4.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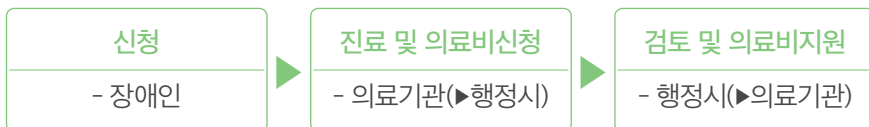
* 단, 의료기관은 제주도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함

- 청구기한 : 투석, 이식검사 또는 혈관수술을 행한 해당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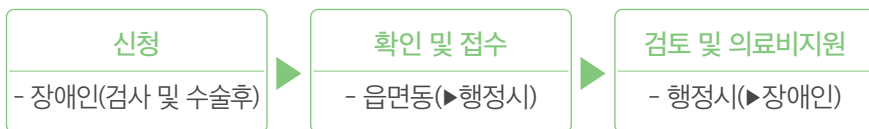
* 도 시책사업 관련,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름

업무 흐름도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0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만 6세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복지카드, 통장사본,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2.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 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3. 급여기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원)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660,00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217,00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773,00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329,00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885,00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0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00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00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109,00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00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00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00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89,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697,000

• 특별지원급여

분류	월 한도액(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185,000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97,000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97,000

4. 본인부담금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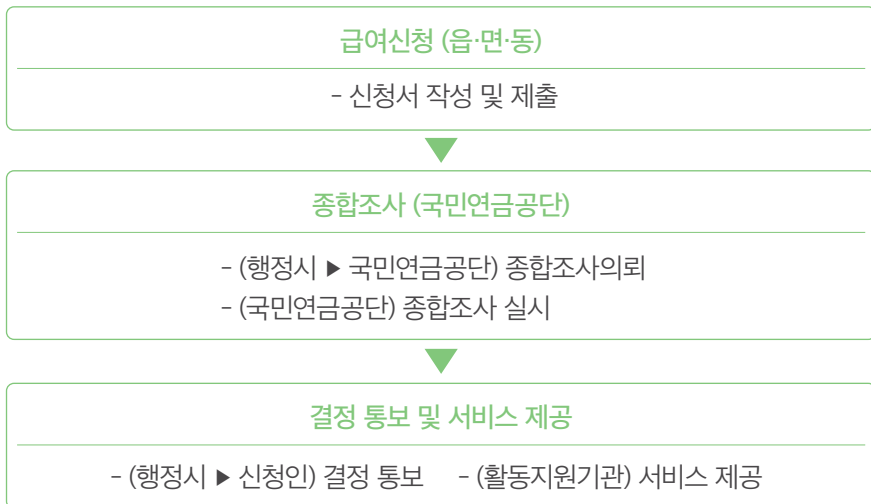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본인부담율	면제	정액	4%	6%	8%	10%
1구간	-	20,000	177,700	177,700	177,700	177,700
2구간	-	20,000	177,700	177,700	177,700	177,700
3구간	-	20,000	177,700	177,700	177,700	177,700
4구간	-	20,000	177,700	177,700	177,700	177,700
5구간	-	20,000	177,700	177,700	177,700	177,700
6구간	-	20,000	177,700	177,700	177,700	177,700
7구간	-	20,000	177,600	177,700	177,700	177,700
8구간	-	20,000	159,800	177,700	177,700	177,700
9구간	-	20,000	142,100	177,700	177,700	177,700
10구간	-	20,000	124,300	177,700	177,700	177,700
11구간	-	20,000	106,600	159,900	177,700	177,700
12구간	-	20,000	88,800	133,200	177,600	177,700
13구간	-	20,000	71,000	106,600	142,100	177,700
14구간	-	20,000	53,300	79,900	106,600	133,300
15구간	-	20,000	36,500	53,300	71,100	88,900
특례	-	20,000	27,800	41,800	55,700	69,700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2년의 경우 177,700원임

※ 조건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존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30. 이전에 수급자격이 결정된 수급자는 기존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업무 흐름도



보건·의료

0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개인 정보이용·제공동의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입원 : 모든질환
- 외래 : 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중증외상은 외래 진료개시일이 2022.1.1.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직장가입자	69,610	116,780	149,660	182,740	216,270
지역가입자	14,730	106,450	146,850	190,850	233,460
혼합(직장+지역)	69,900	118,040	151,420	185,460	219,860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분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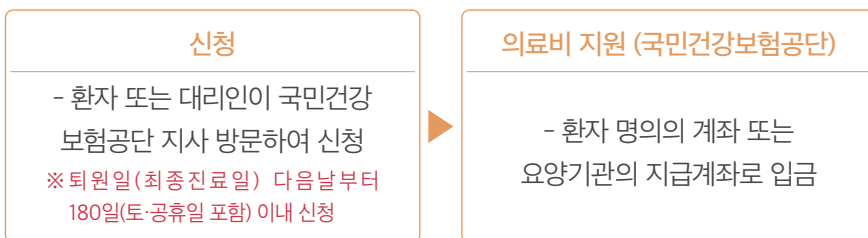
3.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업무 흐름도



0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만족자, 폐암 및 소아암 환자 중 기준 만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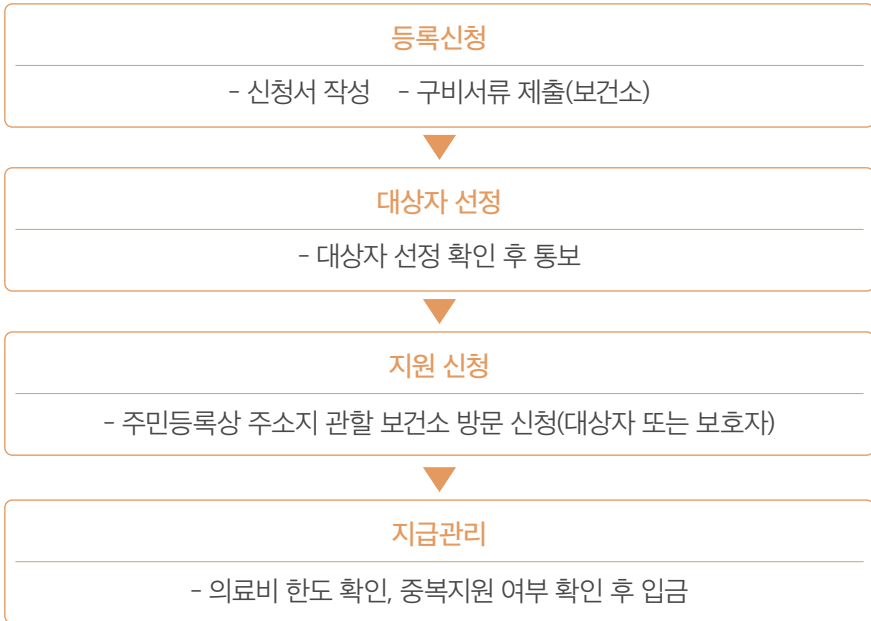
구비서류

- 등록신청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년도 1월 기준),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대상자 신분증 사본
- 지원신청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약제비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비급여 상세내역서(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추후 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사업개요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소아 암환자	폐암 환자
지원 암종	· 5대 암 (위암, 대장암, 간 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원발성 폐암
대상자 선정	· 국가 암 검진 수 검자 ※ 21. 06. 30. 까지 수검자 중 만2년 이내에 5대 암 진단받은 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차상위경 감대상자)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지원기준이하 - 21. 06. 30. 이전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 선정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본인일부부담, 비 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골수이식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 비급여 구분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 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간	· 연속 최대 3년간	·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	· 연속 최대 3년간

업무 흐름도



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서류

- 필 수 :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직증명서, 전월급여명세서,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2. 지원내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해야하며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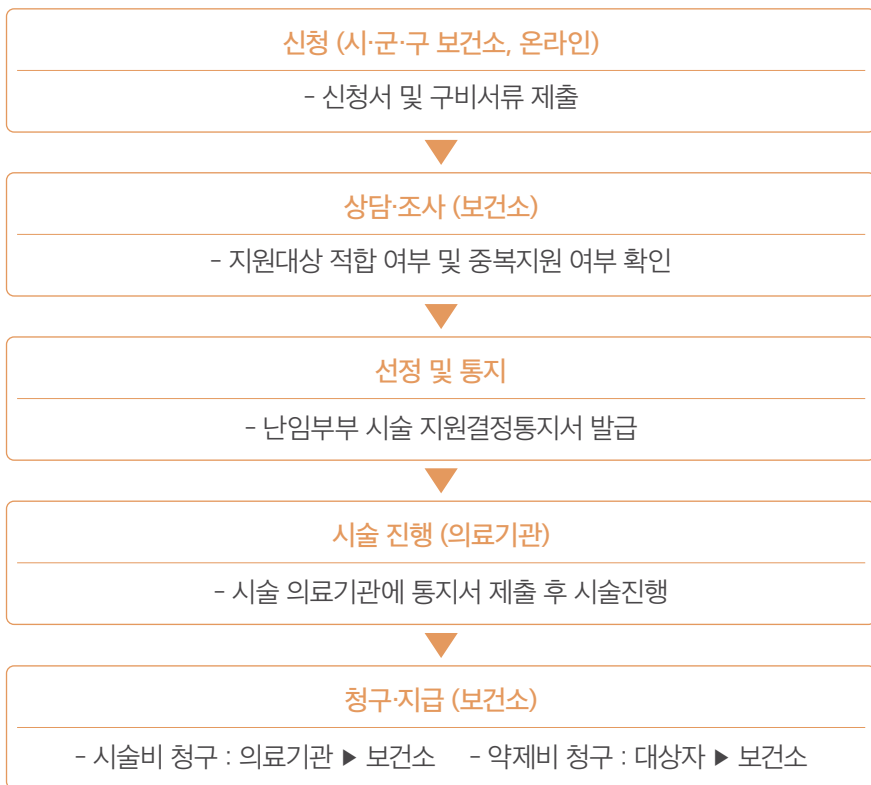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접수
- 온라인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접속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발급] 클릭

4. 난임시술 의료기관(제주도)

의료기관(시술구분)	주소	연락처	팩스
제주대학교병원(체외, 인공)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064-717-2215	064-717-1957
차산부인과(체외, 인공)	제주시 삼무로 41 (연동)	064-742-9661	064-711-9661
한나산부인과(체외, 인공)	제주시 도령로 7 (노형동)	064-711-7717	064-711-7716
엘산부인과(체외, 인공)	제주시 서광로 175 (용담일동)	064-726-6555	064-726-6551
제이산부인과(인공)	제주시 연북로 38 (노형동)	064-747-9100	064-747-9101
한마음병원(인공)	제주시 연신로 52 (이도이동)	064-750-9222	064-750-9600

업무 흐름도



04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구비서류

- 필 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대상자 구분기준

구분	기준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 (72개월) 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2,608,000	91,50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평가종류	판정기준
빈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 6 ~ 59개월 영유아 : 11g/dL 미만 - 5세 유아 : 11.5g/dL 미만 - 임신부 :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12g/dL 미만
신체계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연령별 신장 및 체중 백분위수가 10백분위수 미만) •임신·출산·수유부에서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BMI 18.5미만) ⇒ BMI = 체중 (kg) / (신장(m))²
영양섭취 상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EER)의 75% 미만이거나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티아민, 비타민C 중 한가지라도 섭취량이 평균필요량(EAR) 미만인 경우
기타 영양 위험요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신부 - 다태아 (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신부 - 미숙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보충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0 ~ 6개월 미만), 영아 (6 ~ 12개월 미만) •유아 (만1 ~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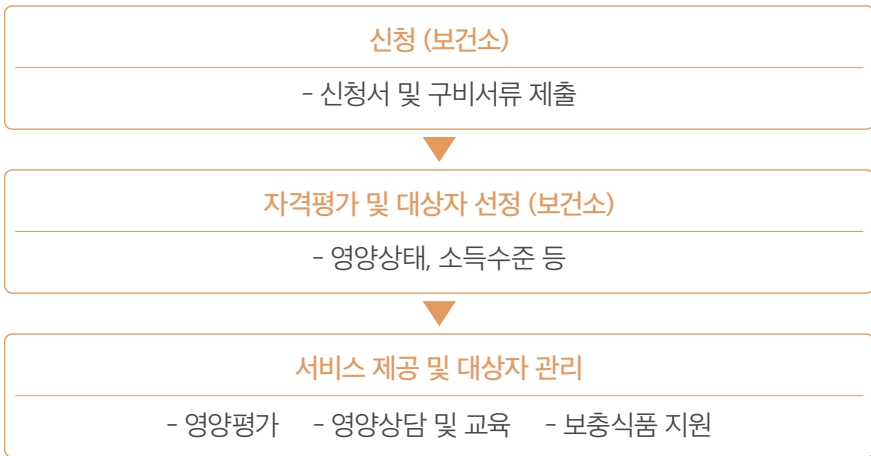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지역 보건소

업무 흐름도



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이상 소득기준 없음)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산모수첩, 신청인 신분증 등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둘째아이상 소득기준 없음)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자

※ 예외(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둘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 산모 등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1,393	175,541	173,710
3인	223,722	242,987	227,649
4인	272,614	303,435	279,532
5인	319,763	354,661	334,652

2.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금줄	제주시 중앙로 254	064-726-5279	064-726-5280
제주이어도 돌봄센터	제주시 연삼로 218, 2층	064-721-1297	064-721-1298
제주천사맘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064-712-1459	064-726-4468
친정맘 산후관리	제주시 동광로 16길 13	064-755-5784	064-723-5784
일르마망&조은맘 제주	제주시 연삼로 411	064-722-3554	0504-090-7207
늘해랑	서귀포시 중동로 26번길 8	064-739-1127	064-733-0051

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55만 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원본), 통장사본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구(둘째아 이상일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음)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022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66,083	295,553	272,614
4인	334,652	369,311	350,228
5인	398,320	435,141	434,898
6인	434,898	472,366	473,200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 ~ 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2.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지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지원율 90% 적용
-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 지급액)

출생시 체중	1인당 지원한도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3백만원
1.5Kg ~ 2.0Kg 미만	4백만원
1.0Kg ~ 1.5Kg 미만	7백만원
1.0Kg 미만	1천만원

3.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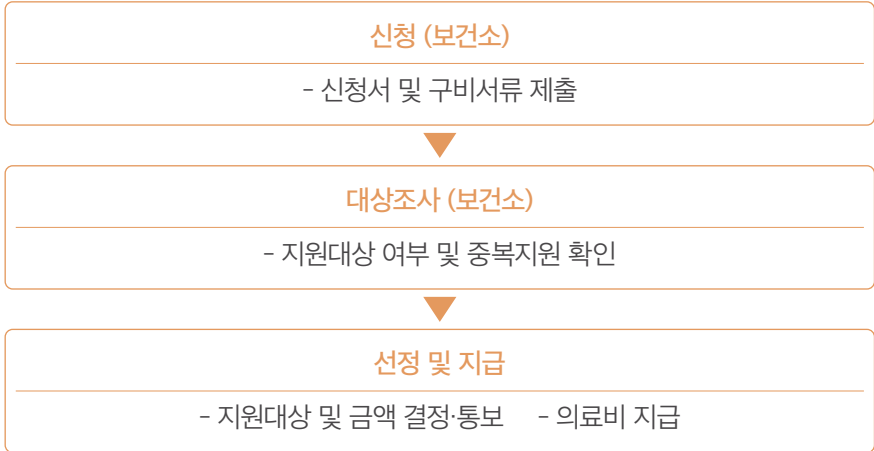
- 신청기간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코성형 : 기능상 문제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

***간이영수증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업무 흐름도



고용·주거

0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콜센터 ☎1350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비서류

- 필 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실증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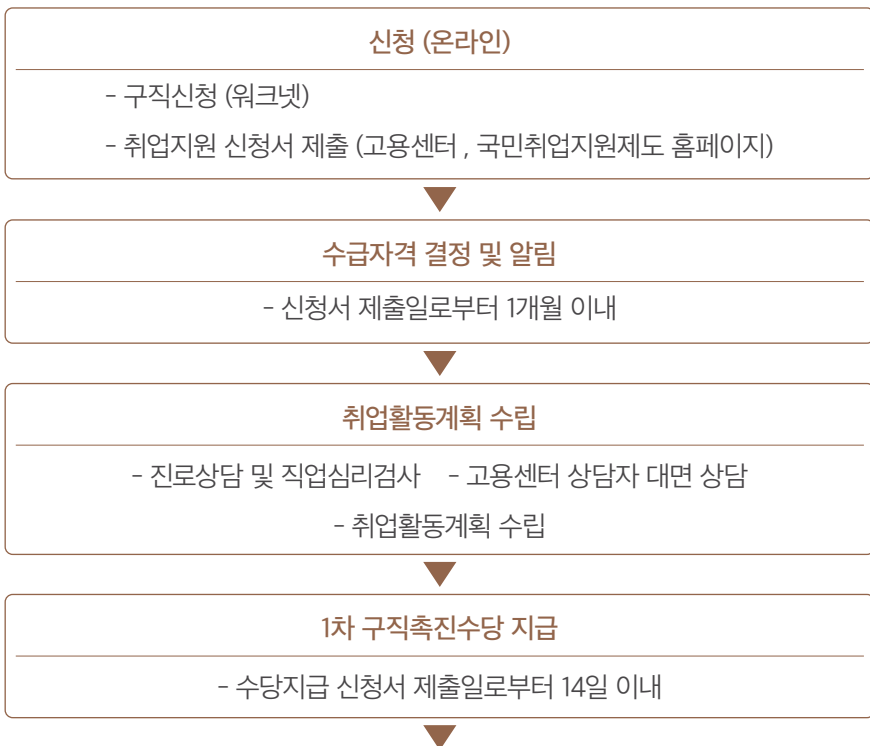
	I유형		II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참고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업무 흐름도





구직활동의무 이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 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2 공공임대주택 정보

- ☎ 사·군·구
 - 시군구청
 - LH 마이홈 1600-1004

공공임대주택 정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구분	내용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는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 신청세대원
신청시	- 신청세대원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 세대원의 배우자, 신청 세대원의 직계존 비속

공공임대주택별 자격요건

• 공급대상

2022년 8월 기준 ◎우선공급 ○일반공급

구분	통합 공공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일반	○			○		
수급자	◎	○ (생계, 의료)	○ (생계, 의료)		○ (주거)	○ (생계, 의료, 주거)
한부모	◎	○	○	◎	○	○
대학생, 청년 및 사회초년생	○		○		○	○
신혼부부	◎	◎ (생계, 의료)	○	◎	○	○
고령자 (만65세)	◎	○ (수급자, 차 상위)	○ (수급자, 차 상위)	◎	○	○
장애인	◎	○	○	○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2022년 기준

구분	소득기준	청약저축
통합공공임대	- 우선공급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영구임대	- 50%이하(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 대상자 우선)	
매입임대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국민임대	- 60㎡ 이하 : 70%이하 - 85㎡ 이하 : 100%이하	- 가입필요 (50㎡ 미만 제외)
행복주택	- 100% 이하 (맞벌이부부의 경우 130% 이하)	- 가입필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자산 및 소득기준

•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

2022년 기준

구분	매입·영구임대	전세·국민임대	공공분양	행복주택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총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77만원 이하	3,577만원 이하	3,577만원 이하	(대학생)자동차 미소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3,577만원 이하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가구원수	50%	70%	80%	100%
1인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083,629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4,263,04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134,853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760,647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860,858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6,223,860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6,586,862원 이하	8,233,578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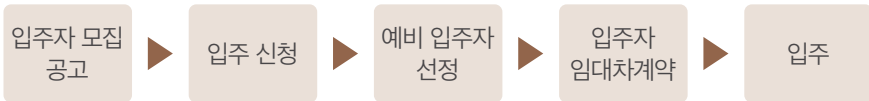
2022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우편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 인터넷접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입주절차



0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2.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사업)
- 신청 :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 - 지급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3년)

3. 지원금액

- 최대 12개월(회)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업무 흐름도



아동·청소년·가족

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 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음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사업개요

1.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2.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4.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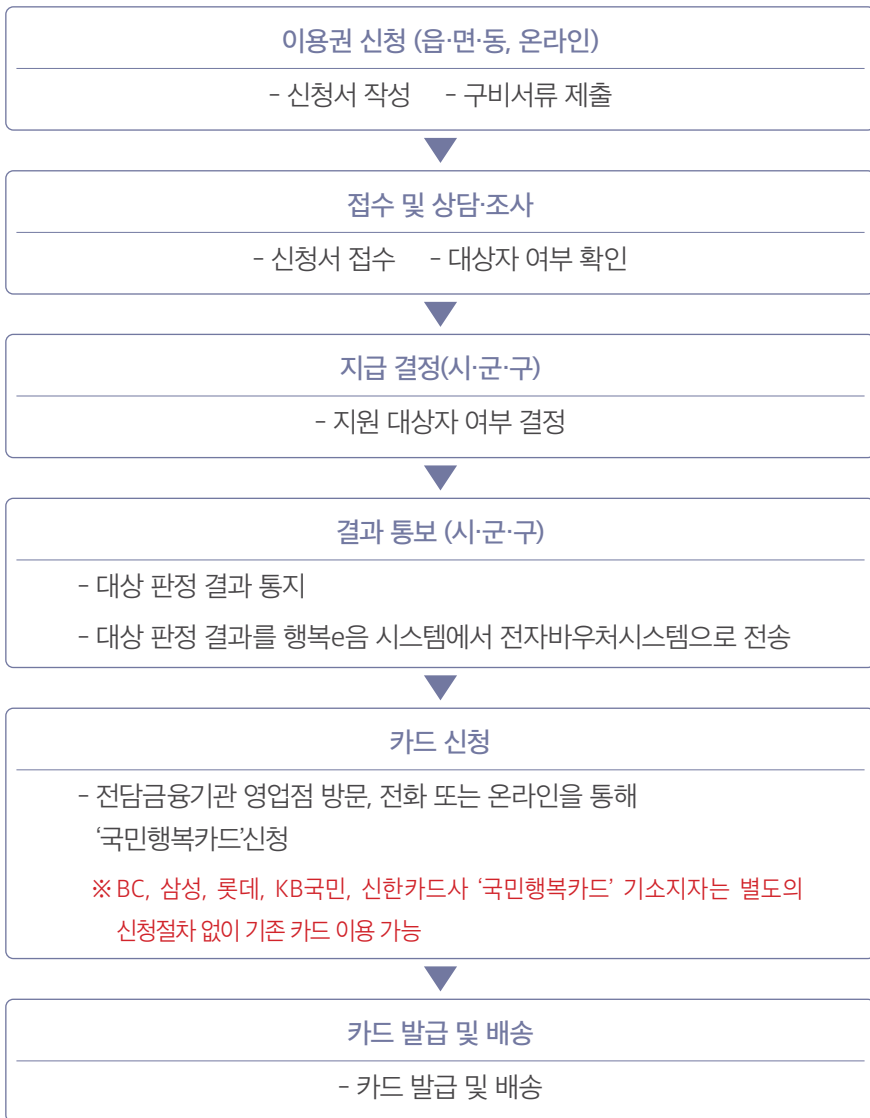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필수

업무 흐름도



02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064-710-2872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의 부모 중 1인

구비서류

신분증, 2자녀 이상 증명서류, 신용카드 발급시 별도 소득증명 서류 제출

사업개요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방문신청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 농협 포함)

2. 카드종류 및 발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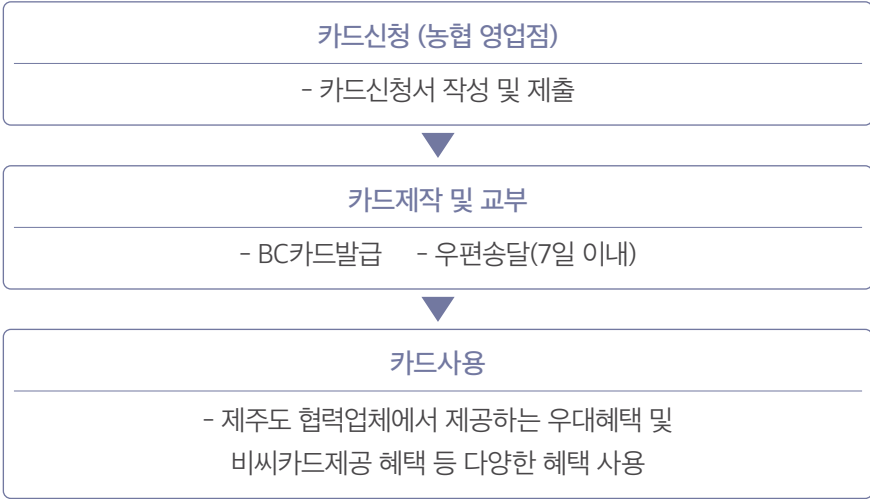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

3. 지원내용

구분	신용카드				
신용카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 1일 1회, 월 2회, 1회 10만원 이내 (충전소 제외) •전기차 충전 30% 할인 - 충전가맹점 :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KT대영채비, 에버온 •커피 전문점 5% 할인 -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커피빈, 파리바게뜨 -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2천원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월 최대 3천원 할인) •학원업종 및 병원(병원·의원·한의원) 업종 이용시 7% 할인 - 월 1회, 월 최대 1만원 할인 (※온라인 학원업종 제외)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5% 할인 - 월 최대 3천원 할인 - SKT, KT, LGU+ (※알뜰폰 통신사는 제외) 				
체크카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전 가맹점 0.2 ~ 0.4% TOP포인트 적립 <table border="1" data-bbox="281 947 966 1024"> <thead> <tr> <th>기본적립</th> <th>추가적립</th> </tr> </thead> <tbody> <tr> <td>0.2%</td> <td>+0.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립은 전월실적 3개월 연속 3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 적립서비스는 2만원 이상 이용건에 한해 제공 •영화 인터넷예매 시 건당 1,500원 청구할인 - 네이버무비 / 인터파크 / YES24 예매시 적용 - 통합 월 2회, 연 6회 •CGV, 롯데시네마(홈페이지포함) 건당 1,500원 청구할인 - 통합 월 2회, 연 6회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이용 시 3% 청구할인 - 월 1회(1회 이용금액 10만원 한도)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 (온라인서점 이용 시 영화·공연티켓 구매 등은 제외) •테마파크 월 1회, 연 6회 1만원 한도 청구할인 - 제주신화월드, 제주뽀로로테마파크, 코코몽에코파크 5% 할인 	기본적립	추가적립	0.2%	+0.2%
기본적립	추가적립				
0.2%	+0.2%				

※ 기타 카드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홈페이지(<http://jejuisarang.bccard.com>)로 접속 후 확인가능

업무 흐름도



03 청소년증 발급



발급대상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학생, 비학생 구분 없음) (만9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매(3x4cm)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

사업개요

1.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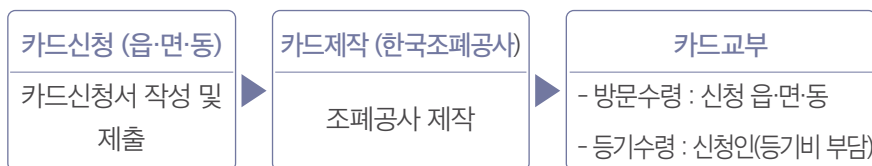
2. 카드종류 발급기간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

3. 용도

- 신분확인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등)
- 시내버스, 지하철, 극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 선불형 교통카드

업무 흐름도



0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바우처 콜센터 ☎1566-3232

지원대상

출생연도기준 만9세 ~ 24세 여자 청소년(1998. 1. 1. ~ 2013. 12. 31. 출생자 (2022년 기준))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사업개요

1. 지원금액

- 월 13,000원('22. 7 ~ 12월)
- 2022년 하반기 바우처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원 실시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1월, 7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전액 소멸

2. 지원기간

- 만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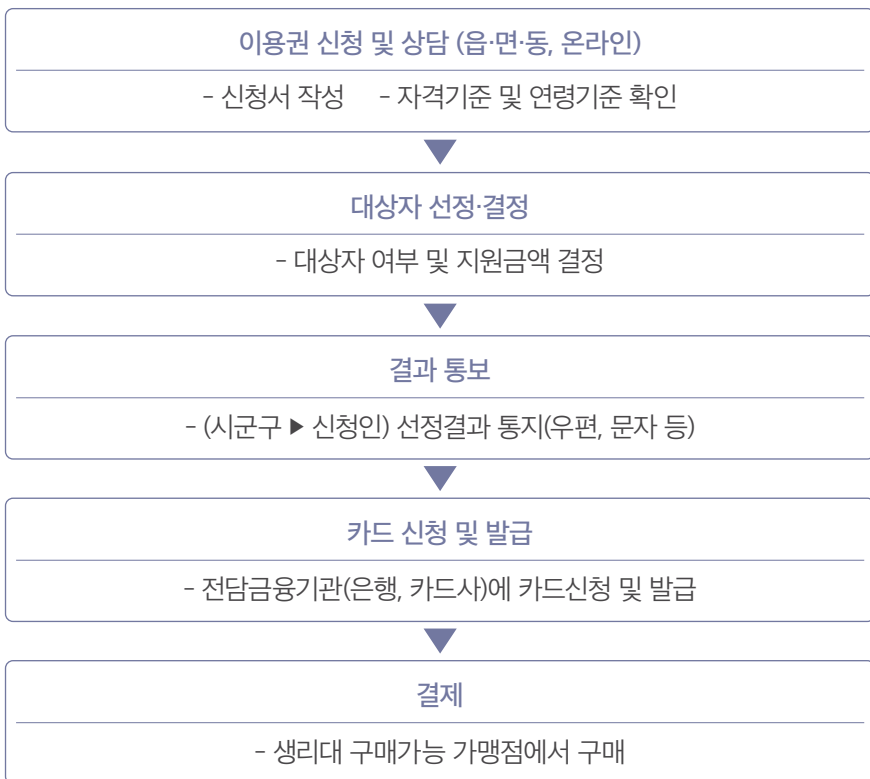
•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확인 가능

업무 흐름도



0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666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구비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상 아동	국가(지자체) 지원
기본 매칭 적립	월 5만원	월 10만원
추가 적립	월 45만원	없음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고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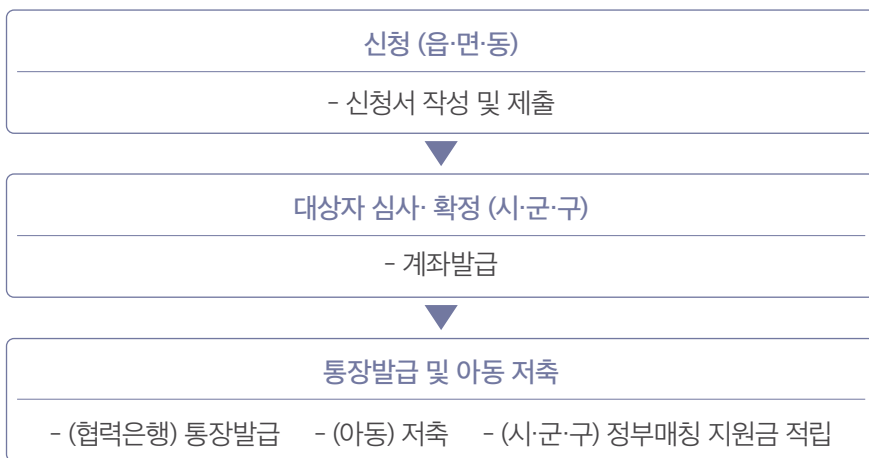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 온라인신청 : 복지포(<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업무 흐름도



0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구비서류

자립수당지급신청서, 신분증, 사이버강의 이수증(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출력) 등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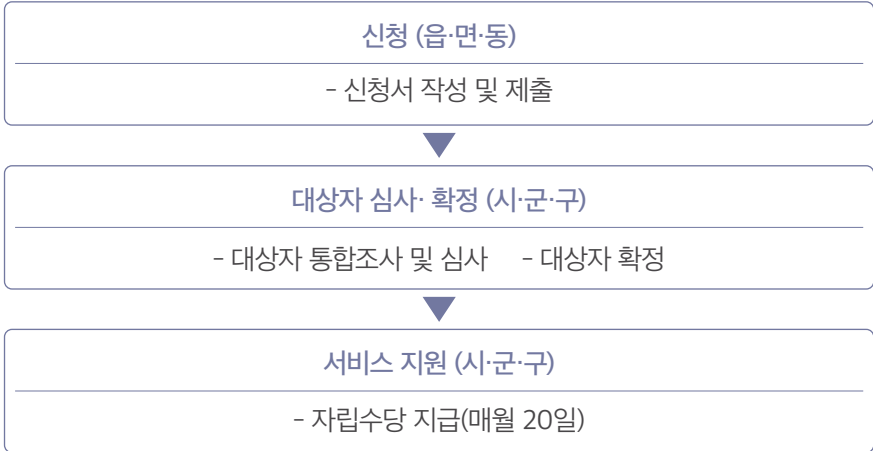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5만원 지급 (매월 20일)
- 보호종료일부터 최대 5년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업무 흐름도



07 제주도민 안전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사업개요

1.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2. 4. 1.(00:00) ~ 2023. 3. 31.(24:00) 1년
 - 보험료 :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가입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우편 또는 팩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문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대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주도청 도민안전보험 안내 (<http://www.jeju.go.kr/safe/insurance/info.htm>)

3. 보장내역

연번	보장항목	보장한도 (단위: 천원)	가입대상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0	15세 이상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5,000	전 연령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0	15세 이상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0	전 연령
5	익사사고 사망(질병 제외)	20,000	15세 이상
6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0	15세 이상
7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0	전 연령
8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0	15세 이상
9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0	전 연령
10	강도 상해사망	10,000	15세 이상
11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0	전 연령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	12세 이하
13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10,000	전 연령
14	유독성 물질 사망	10,000	15세 이상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	65세 이상
16	개 물림 사고 사망	10,000	15세 이상
17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10,000	전 연령
18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0	전 연령
19	헌혈 후유증 보상금	5,000	전 연령
20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백신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3,000	15세~80세
21	화상수술비	1,000	전 연령
22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	전 연령

04/05

주요기관 연락처

도내 행정기관 연락처

04

주요기관 연락처

주요기관	연락처	주요기관	연락처
제주복지콜	1833-9514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LH 마이홈	1600-1004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여성긴급전화	064-136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교육급여 콜센터	02-6222-606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제주국내입양센터	064-758-084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64-759-0911
국민연금공단	135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064-757-3400
국토교통부	1599-0001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영상통화)	010-3449-392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센터	133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질병관리청	1339
만덕콜센터	064-120	청소년전화	1388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064-712-1391
서민금융콜센터	1397	한국전력공사	1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손말이음센터	107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환경부	1577-8866

05

도내 행정기관 연락처

제주도청

구분		전화	팩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710-2819
	생활보장팀	710-2816	
	지역복지팀	710-4361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710-2821	710-2829
	노인시설팀	710-2791	
	노인일자리팀	710-6681	
	양지공원관리팀	710-66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10-2831	710-4519
	장애인시설팀	710-4511	
	장애인자활팀	710-2891	
	장애인일자리팀	710-4551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인권정책팀	710-2861	710-2869
	가족친화팀	710-2871	
	청소년팀	710-2841	
	보육정책팀	710-2881	
	아동친화팀	710-2372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710-2911	710-2919
	역학조사팀	710-4071	
	의료수급관리팀	710-2331	
	재택치료지원팀	710-2931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710-4971	710-2919
	특별방역팀	710-4961	
	현장점검팀	710-2941	
	민원상황팀	710-2771	

도내 행정기관 연락처

제주시청

	구분	전화	팩스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728-2511	728-2519
	복지자원관리팀	728-2471	
	희망복지지원팀	728-2981	
	사회서비스팀	728-2581	
	아동지원팀	728-2681	
	통합돌봄지원팀	728-3041	
	아동보호팀	728-2671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28-2491	728-2529
	노인요양팀	728-2541	
	장애인복지팀	728-3441	
	장애인재활팀	728-2551	
	장묘문화팀	728-2561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728-2531	728-2539
	의료보장팀	728-2991	
	통합조사팀	728-2481	
	통합관리팀	728-2461	
	자활복지팀	728-2521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728-2571	728-2579
	가족지원팀	728-2851	
	보육팀	728-2591	
	어린이집지도팀	728-2841	
	청소년팀	728-2601	
	청소년수련관팀	728-3481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728-2611	728-2619
	식품위생팀	728-2621	
	유통식품관리팀	728-2631	
	위생지도팀	728-2641	

서귀포시청

	구분	전화	팩스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760-2521	760-2529
	희망복지지원팀	760-2531	
	기초생활보장팀	760-6511	
	통합조사팀	760-2541	
	통합관리팀	760-2551	
	통합돌봄지원팀	760-2851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60-2381	760-2389
	노인요양팀	760-2401	
	장묘문화팀	760-6521	
	장애인복지팀	760-2391	
	장애인재활팀	760-3221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760-2441	760-2449
	가족지원팀	760-2471	
	보육팀	760-2451	
	어린이집지도팀	760-2591	
	청소년팀	760-2461	
	아동지원팀	760-6441	
	아동보호팀	760-6454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760-6501	760-2429
	식품위생팀	760-2421	
	위생지도팀	760-2431	

제주시					
기관명	전화	팩스	기관명	전화	팩스
건입동주민센터	728-1536	728-4649	용담1동주민센터	728-1534	728-4589
구좌읍사무소	728-1523	728-7719	용담2동주민센터	728-1535	728-4619
노형동주민센터	728-1543	728-4859	우도면사무소	728-1527	728-4359
도두동주민센터	728-1546	728-4949	이도1동주민센터	728-1530	728-4469
봉개동주민센터	728-1539	728-4739	이도2동주민센터	728-1531	728-4499
삼도1동주민센터	728-1532	728-4529	이호동주민센터	728-1545	728-4919
삼도2동주민센터	728-1533	728-4559	일도1동주민센터	728-1528	728-4409
삼양동주민센터	728-1538	728-4709	일도2동주민센터	728-1529	728-4439
아라동주민센터	728-1540	728-4769	조천읍사무소	728-1524	728-7859
애월읍사무소	728-1522	728-8849	추자면사무소	728-1526	728-4309
연동주민센터	728-1542	728-4829	한경면사무소	728-1525	728-7919
오라동주민센터	728-1541	728-4799	한림읍사무소	728-1521	728-7639
외도동주민센터	728-1544	728-4889	화북동주민센터	728-1537	728-4679
서귀포시					
기관명	전화	팩스	기관명	전화	팩스
남원읍사무소	764-3001	760-4119	영천동주민센터	760-4651	760-4659
대륜동주민센터	760-4751	760-4759	예래동주민센터	738-1542	760-4849
대정읍사무소	760-4011	760-4019	정방동주민센터	760-4531	760-4539
대천동주민센터	760-4781	760-4789	중문동주민센터	760-4811	760-4819
동홍동주민센터	760-4681	760-4689	중앙동주민센터	760-4561	760-4569
서홍동주민센터	760-4721	760-4729	천지동주민센터	760-4519	760-4599
성산읍사무소	760-4211	760-4219	표선면사무소	760-4411	760-4419
송산동주민센터	760-4501	760-4509	효돈동주민센터	767-1535	760-4629
안덕면사무소	760-4311	760-4319			
보건소					
제주시보건소	728-4010		서귀포시보건소	760-6001	
제주시서부보건소	728-411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760-6201	
제주시동부보건소	728-418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760-6101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각 복지사업안내 지침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정보

제주복지 '넷' 사회복지시설·단체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서비스 가이드북

※ 본 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주복지넷



제주복지통(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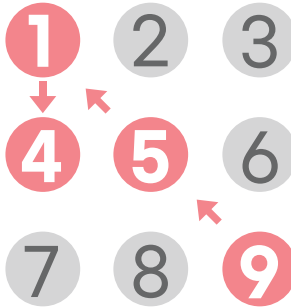


제주복지통
(안드로이드)

복지정보 상담전화 제주복지콜

1833-9514

운영시간(평일) 09:00~18:00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고승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연락처 064-702-3784 홈페이지 www.jejubokji.net 편집 / 디자인 4point4Design[포인트포디자인]010-2222-2217



제주복지넷



제주복지통(iOS)



제주복지통
(안드로이드)

복지정보 상담전화 제주복지콜



※ 본 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